

〈1차시〉

#1-1. (등장인물 투샷) : 일하는 사무실 배경

빈 : 과장님 요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료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법의 목적이 어떻게 되죠?

민우 : 음..일단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1-2 (빈 원샷)

빈 : 네 그리고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그리고...

#1-3 (등장인물 투샷-) 원샷) : 틀렸을 때

빈 : 조산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민우(원샷) : 아니지.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해. 또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각각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게 되지.

#1-4 (빈 원샷-)투샷) : 맞췄을 때

빈 :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또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각각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게 되지요.

민우 : 역시 정확히 알고 있네.

#2-1. (등장인물 투샷) : 일하는 사무실 배경

빈 : 과장님 의료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확히 어떤거죠?

민우 : 음..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되어 있지. 그리고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해.

#2-2 (빈 원샷)

빈 : 네 그럼 의료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2-3 (등장인물 투샷-) 원샷) : 틀렸을 때

빈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민우(원샷) : 아니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어

#2-4 (빈 원샷-)투샷) : 맞혔을 때

빈 :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어

민우 : 역시 모르는게 없고만

#3-1. (등장인물 투샷) : 일하는 사무실 배경

빈 : 과장님 의료법에서 종합병원이 갖춰야할 요건이 어떻게 있을까요?

민우 : 음..우선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하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뒤야해.

#3-2 (빈 원샷)

빈 : 네 맞아요. 그리고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그리고...

#3-3 (등장인물 투샷-) 원샷) : 틀렸을 때

빈 : 병리과 및 치과를 포함한 8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우(원샷) : 아니지.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뒤야해.

#3-4 (빈 원샷-)투샷) : 맞혔을 때

빈 : 네 알아요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뒤야합니다.

민우 : 역시 정확히 알고 있네.

1차시 : 의료법 총칙 및 의료인

#1.

이번 시간에는 의료법 중 의료법 총칙 및 의료인에 대해 학습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법의 총칙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전문가 : 의료법에서 제일 먼저 이러한 목적을 밝힌 이유는 의료법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있으며 이는 의료법의 모든 조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제36조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는 조항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전문가 : 의료법의 인적범위는 의료법 제1조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도 의료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도 포함이 되며 “의료 해외진출 및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는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받는 모든 외국인도 의료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은 의료법에서 지정하는 의료인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신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6.

전문가 : 이렇게 의료행위를 위해서는 의료인 면허가 필수입니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게되며, 모든 의료인은 자신의 임무인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료법은 의료인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을 기반으로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보조업무가 가능합니다.

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기사 역시 의료인과 별도로 구분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7.

수정 : 의료인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정변 :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보면 의사는 국가로부터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높은 직업적 윤리의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의료인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의 처지에서도 의료행위에서 무엇보다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

다음은 의료법에서 구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9.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이때 제3조제2항제3호의 라,마,바의 내용은 2021년 3월 5일부터 변경항목이 시행됩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0.

다음은 의료법에서의 병원의 기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1.

전문가 : 이렇듯 병원·한방병원의 경우는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하지만 치과병원은 별도의 병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는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요양병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

다음은 종합병원의 기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13.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14.

전문가 :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2호의 의미에서 총 7개 진료과목 이상의 의미는 내과,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이렇게 7개 진료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는 필수,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에서는 3개,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중 택일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또 여기서 전속 전문의란 타 의료기관에 소속되거나 근무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과목만 진료하는 전문의를 의미합니다.

#15.

다음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대해 중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16.

전문가 : 상급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6.

다음은 전문병원 지정에 대해 중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1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가 : 전문병원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심화

이번 심화시간에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조산사의 업무상 과실에 관련한 2007년 10월 25일 서울북부지법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조산사는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분만에 조력하는 행위와 임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만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해산부와 신생아에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 의사 등 타종 의료인의 임무 범위에 속한다.

자궁절개시술에 의한 분만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산원의 조산사가 지도의사의 자문도 받지 아니한 채 이미 자궁절개시술에 의한 두 번의 출산경험이 있는 산모에게 자궁파열의 위험이 많은 자연분만(브이백)을 권유하여 분만하게 하고, 분만중 이상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여 산모의 자궁파열로 태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태아사망 등에 대한 위 조산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된다.

위 판례를 살펴보면 조산사가 이상 분만일 경우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 의사 등 타종 의료인의 임무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